

#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2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17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
-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
- 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- 법인격 및 명칭을 정함 (안 2조)
  - 법인격 :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치
  - 명 칭 : 재단법인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

-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(안 5조)
- 조합에서 수행할 사업을 재산의 관리, 신용보증,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,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함 (안 7조)
- 조합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, 건물,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(안 8조)
- 재산으로 출연된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고 타용도 사용시 회수토록 규정함 (안 9조)
-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계약을 체결토록 함 (안 10조)
- 매 사업 연도에 발생하는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잔여액은 기본재산 확충에 사용토록 함 (안 11조)
- 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평가 및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(안 13조, 14조)
- 조합 해산시 잔여 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토록 함 (안 15조)

## 5. 검토의견

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바, 조례명, 용어의 재정립, 법인에 대한 의회의 감사 보고자료 요구권, 법인의 정관 제정 개정 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됨